

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 및 지형도면 고시

1. 성남 도시관리계획(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) 결정(변경)에 대하여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하고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 제32조 및 「토지이용규제기본법」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.
2. 관계 서류는 성남시청 도시계획과에 비치하여 일반에게 보이고 있으며 지형도면은 토지이음(<http://eum.go.kr>)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.

2026. 06. 22.

성 남 시 장

가.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조서 : 변경없음

나. 위례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1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
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2) 기반 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3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구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4)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가) 건축물 용도·건폐율·용적률·높이·배치·형태·색채·건축선 및 기타사항
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 조서 : 변경없음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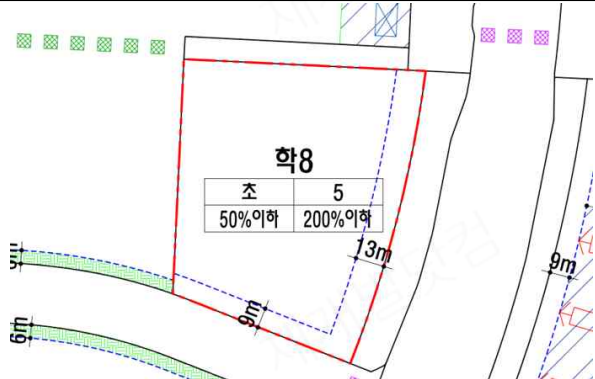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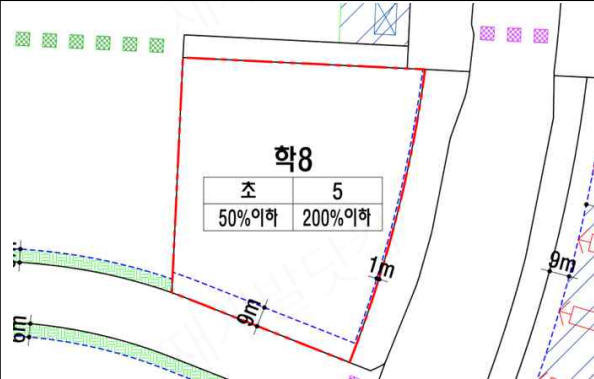
나) 특별계획구역의 지정 및 구역별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
(변경) 조서: 변경없음

다.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: 변경

1)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(변경)도: 변경없음

2) 용도지역·용도지구의 세분 및 세분된 용도지역·용도지구간의 변경에 관한 도시관리
계획 결정(변경)도: 변경없음

- 3) 기반시설의 배치와 규모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: 변경없음
 4)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: 변경없음
 5) 건축물 및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(변경)도: 변경
 가)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: 변경

구분	기 정	변 경
내용		

□ 변경사유서

도면번호	구분	변경 내용	변경 사유
학8	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	- 학8(위례고운초등학교) 건축한계선 변경 (13m → 1m)	- 학교 내 모듈러교실(특별교실) 설치를 위한 건축한계선 변경

라.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: 변경없음

2) 지형도면 고시도: 도면계재 생략